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아 동 · 청 소 년 의 성 보 호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282호, 2020. 5. 19. 공포, 2020. 11. 20. 시행) 으로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며 이들에게 선고되던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 등을 폐지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던 사안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관련 하위법령을 신설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제17352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던 사안을 삭제하고자 함.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으로 취업제한 점검·확인, 성범죄자 경력자 해임 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전환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282호, 2020. 5. 19. 공포, 2020. 11. 20. 시행) 으로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며 이들에게 선고되던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 등을 폐지함에 따라 영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를

변경하고 처리 자료를 정비함.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관련 사안 삭제(안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별표 1 삭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부칙에 따라 법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 송치·교육 이수명령 등 관련 사안 삭제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설치에 따른 하위법령 신설(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삭제, 제15조의2 신설 등)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교육과정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사안의 관련 규정을 삭제 등 개정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 변경 및 처리 자료 일부 삭제(안 제39조 개정)

취업제한 점검·확인, 성범죄자 경력자 해임 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의 전환 및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며 이들에게 선고되던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 등을 폐지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 등을 정비함

라.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 제14조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6호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제10조”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10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대상아동·청소년의 송치)”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대상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5호”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법 제47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진로·진학 및 직업훈련 지원 업무를 말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경찰청장”을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 및 제3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4 중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

정규정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며,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u>	<삭 제>
<u>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u>	<삭 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

<삭 제>

·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
문구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법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
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
12조·제18조·제27조, 「가
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또
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
1항제2호·제10조에 따라 운
영되는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
의 연락 및 협조

제8조(대상아동·청소년의 송치)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법
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
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사법경찰

제5조(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

1. ~ 5. (현행과 같음)

6.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
1항제2호·제10조-----

제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에 대한 조치 등) <삭제>

① -----

관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2. ~ 4. (생략)

제9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 ① 검사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게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을 마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40시간 내외로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

-----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

② -----

-----.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호-----
--- 같은 법 제17조-----

2. ~ 4. (현행과 같음)

<삭 제>

등을 운영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이라 한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중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상아동·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질병치료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과정등의 이수 통보 등) ① 제9조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여성가족부장관 및 교육수탁시설의 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청

<삭 제>

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와 여성가족부장관(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등을 마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 여부

2.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이나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 검사나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에게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의 이수 상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을 가정법

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
부로 송치할 수 있다.

1.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
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2. 교육과정등을 이수하고 있는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
등의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
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사
유로 보호 및 재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4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강
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
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하려는 경
우 그 대상기관 또는 단체를 추
천할 수 있다.

제14조(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
임권 안내 등) 법 제45조에 따
른 보호시설 및 법 제46조에 따
른 상담시설은 피해아동·청소
년 등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

<삭 제>

제14조(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
임권 안내 등) -----

른 변호사 선임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제11조제5호, 제13조제1항제4호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대하여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경찰청장(제3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교육장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

-----.

제15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법 제47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진로·진학 및 직업훈련 지원 업무를 말한다.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57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여성가족부장관(제2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게시관 게시업무를 위임받은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장 및 제3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paper is otherwise blank, with no text or other markings.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장

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④ 여성가족부장관(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육수탁시설의 장 및 제3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 통보에 관한 사무

4.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 통보의 수리 및 통보요청에 관한 사무(교육수탁시설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생략)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1. ~ 5. (현행과 같음)

④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5. (현행과 같음)

⑤ -----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u>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 수강명령 발령에 관한 사무</u> 2. ~ 4. (생략) 5. <u>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 이수 통보의 수리 및 통보요청에 관한 사무</u> 6. <u>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수명령의 취소에 관한 사무</u> 7.·8. (생략) ⑥·⑦ (생략)	----- -----. <삭제> 2. ~ 4.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7.·8.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연 락 처	02-2100-6405